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, 어려운 용어를 쉽게 고쳐 정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일부개정예규안

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 중 "상이점"을 "서로 다른 점"으로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 중 "이 예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"을 "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정비) ① (생략)</p> <p>② 임차 항공기에 적용하는 정비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등록국과 운영국의 정비요건의 <u>상이점</u> 및 이들 국가가 인가한 정비 프로그램의 양립성</p> <p>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3조(<u>유효기간</u>) 이 예규는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7조(정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 <u>서로 다른 점</u> ----- ----- 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<u>재검토기한</u>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에 따라 2024년 5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